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항목

2019. 2



1. 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기관구분	대학병원/병·의원/전국조직/기타() 분석분야: 자체분석/분석의뢰	
소재지	(-)					
관할(지)청				총인원: ___명 (비정규직)	의사: ___명()	
대표자					간호사: ___명()	
전화번호					임상병리사: ___명()	
					방사선사: ___명()	
				분석사: ___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변경지정일:			
수검자 현황 (2018년)	특수건강진단 ___명		배치전건강진단 ___명		수시건강진단 ___명	
	임시건강진단 ___명		일반건강진단 ___명		종합검진 ___명	

2. 평가일시

평가일(1차 평가)	2019년 월 일	평가일(이의신청)	2019년 월 일
------------	-----------	-----------	-----------

3. 평가결과 획득점수

총 점			
평가항목	점 수	평가항목	점 수
A. 운영체계	/ 점	B. 업무성과	/ 점

4. 평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에 근거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평가반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반장				
평가반원				
외부전문가				

평가대상기관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평가대상기관(책임자)			
평가대상기관(담당자)			

5.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항목 총괄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합 계			1,000	
A 운영 체계 (400)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80)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60
			1.2 업무관리체계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15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40
			2.2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	50
			2.3 직원 교육·훈련(내·외부)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70)	3.1 고성능 장비 추가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40
			3.2 법정 시설 및 장비 구비 및 성능	130
	가 감 점 항 목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의 정부포상 수여 실적(대통령:5,총리:4,장관:3,이사장:2)	+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 15점, 최대 -80점)	-15~ -80
4.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건별 - 2점, 최대 -20점)			-2~ -2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 (권소사업 구성 포함, 동일기관 +5점, 타기관10점)	+5~ +10	
B 업무 성과 (600)	소 계		600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10)	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70
			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40
			1.3 청력검사	40
			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40
			1.5 판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	100
			1.6 2차 검진 대상자 후속조치	20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00)	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능력	40
			2.2 청각학적 검사능력	20
			2.3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능력	20
			2.4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여 여부	20
	B.3	신규 발굴률 (50)	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률	50
	B.4	고객 만족도 (80)	4.1 고객만족(수검자, 사업장) 및 서비스 향상활동	60
4.2 사후관리 대상 지도			20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5.1 문진결과 결과표 관리 및 결과표 송부	60 (가점+10)	
가 감 점 항 목	B.6 직업병 감시체계	6.1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50	

6.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항목 비교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기존 문항	기존 배점	배점	
합 계				500	1,000	
A 운영 체계	소 계			197.5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80)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일부신설	30	60
			1.2 업무관리체계	신설	-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15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신설	-	40
			2.2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	신설	-	50
			2.3 직원 교육·훈련(내·외부)	4-1~5, 4-9	40	6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170)	3.1 고성능 장비 추가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신설	-	40
			3.2 법정 시설 및 장비 구비 및 성능	3-1~10,12, 14,16~24	127.5	130
	가 감 점 항 목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의 정부포상 수여 실적(대통령:5,총리:4,장관:3,이사장:2)	신설	-	+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80점)	신설	-	-15~ -80
			4.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건별 -2점, 최대 -20점)	신설	-	-2~ -2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권소사업 구성 포함, 동일기관 +5점, 타기관 +10점)	신설	-	+5~ +10
	B 업무 성과	소 계			302.5	600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10)	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2-1~2-2	35	70
			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2-3~2-4	30	40
			1.3 청력검사	2-5~2-6	30	40
			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2-7~2-8	20	40
			1.5 판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	2-9~2-12	70	100
			1.6 2차 검진 대상자 후속조치	신설	-	20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00)	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능력	1-1~1-13	35	40
			2.2 청각학적 검사능력	1-14~1-17	20	20
			2.3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능력	1-20~1-21, 4-11	15	20
			2.4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여 여부	1-19	2.5	20
B.3		신규 발굴률(50)	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률	신설	-	50
B.4		고객 만족도 (80)	4.1 고객만족(수검자, 사업장) 및 서비스 향상활동	4-6~4-8, 4-13,4-14	20	60
	4.2 사후관리 대상 지도		2-13	15	20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5.1 문진결과 결과표 관리 및 결과표 송부	4-10,4-12	10	60 (가점 +10점)	
가 점	B.6 직업병 감시체계	6.1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신설	-	+50	

7.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A. 운영체계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80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60
	1 특수건강진단 운영방침 수립		10
	2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지침		10
	3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		10
	4 진단검사 시료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		10
	5 폐활량검사 표준매뉴얼 보유여부		10
	6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10
1.2 업무관리체계			2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150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40
2.2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			50
	1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		30
	2 전문 인력 고용 기간		20
2.3 직원 교육·훈련(내·외부)			60
	1 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10
	2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		10
	3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인력 제외)		10
	4 내부 직무교육 실시		10
	5 학술대회 참여정도		10
	6 특검기관 소속인력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10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70
3.1 고성능 장비 추가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40
3.2 법정 시설 및 장비 구비 및 성능			130
	1 검사 및 분석장비 대장 관리		10
	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필름/스크린 시스템)		5
	3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시설 장비의 유지보수(디지털 시스템)		5
	4 폐활량 검사기 보유 및 유지		5
	5 폐활량 검사기 보정		5
	6 폐활량 검사기 감염예방 조치		10
	7 폐활량 검사시 일회용품 사용		5
	8 폐활량검사실		10
	9 청력검사실 및 부스		10
	10 청력검사기 보정점검		5
	11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대장		5
	12 진단검사 시료저장의 적절성		5
	13 폐기물 처리		5
	14 비상용 샤워 및 세안설비 설치		10
	15 가스용기 전도방지 장치 및 저장		5
	16 분석용 시약 보관상태		5
	17 분석장비 국소배기장치		5
	18 보호용구 구비		5
	19 냉장보관 설비		5
	20 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		5
	21 저울 검정 및 교정		5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가·감점)			
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의 정부포상 수여 실적 (대통령:5,총리:4,장관:3,이사장:2)		+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 15점, 최대 -80점)		-15 ~-80
4.3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 - 2점, 최대 -20점)		-2 ~-20
A.5 종합화 (가점)			
5.1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포함, 동일기관 +5점, 타기관 +10점)		+5 ~+10

B. 업 무 성 과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10
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70
	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30
	2 사전조사절차 실행여부		40
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40
	1 문진의 적정성		20
	2 이학적 검사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20
1.3	청력검사		40
	1 청력검사 불일치성		20
	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20
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40
	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지침서		20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정성		20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1.5	판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 소견 설명		100
	1 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의 적정성		25
	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5
	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25
	4 검사항목의 적절성		25
1.6	2차 검진 대상자 후속조치		20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00
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능력		40
	1 흉부 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위치		2.5
	2 흉부 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		2.5
	3 흉부 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2.5
	4 흉부 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2.5
	5 심장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2.5
	6 횡경막 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2.5
	7 횡경막 양측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2.5
	8 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2.5
	9 폐활량 검사 설문(환류)기록 파악		5
	10 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		5
	11 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		5
	12 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		5
2.2	청각학적 검사능력		20
	1 청력 2차 검사 시행		5
	2 골도 청력검사 수행		5
	3 기도 음차폐 검사		5
	4 골도 음차폐 검사		5

구분	세부평가 항목	평가	점수
2.3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능력		20
	1 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결과		5
	2 내부정도관리		5
	3 임상정도관리 참가실적		5
	4 검체의 외부의뢰 체계 구축		5
2.4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여 여부		20
B.3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률		50
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률		50
B.4	고객 만족도		80
4.1	고객만족(수검자, 사업장) 및 서비스 향상활동		60
	1 특수건강진단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20
	2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10
	3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 지원		20
	4 직원신분 공개		5
	5 수검자 사생활 보호		5
4.2	사후관리 대상 지도		20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10)
5.1	문진결과 결과표 관리 및 결과표 송부		60
	1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의 적정성		50 (가점+10)
	2 문진결과 기록보관		10
B.6	직업병 감시 체계 (가점)		
6.1	급성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50

A. 운영 체제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A.1.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취득 점수	
A.1.1.1	특수건강진단 운영방침 수립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적합한 운영방침의 수립여부 평가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적정한 경우	□ 10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보통인 경우	□ 6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 2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기관에 적합한 운영방침의 수립여부를 평가</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운영방침을 작성하여 문서화¹⁾하여야 함.</p> <p>1)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의 평가 문항에서 “문서”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평가기간 동안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고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6점 : 평가기간 동안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지 않았으나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2점 : 운영방침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입증미흡한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침은 최고 경영자의 정책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제시되어야 하며,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매년 운영방침의 성과개선 여부를 평가. 그렇지 않은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문서화 되어있지 않으면 미흡으로 평가 			
A.1.1.2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서 평가	표준분석 지침서가 적정한 경우	□ 10	
	표준분석 지침서가 보통인 경우	□ 6	
	표준분석 지침서가 미흡한 경우	□ 2	
<p>○ 평가목적 : 분석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을 표준화한 생체시료 분석업무 지침을 보유하여 신뢰성 확보</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표준 분석지침 비치(전자화일 최종본 인쇄물 또는 유인물 비치) - 6점 : 표준 분석지침 보완 필요한 경우 - 2점 : 표준 분석 지침 미비치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자 면담 결과 등 지침서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등급 하향 평가 -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타 기관의 지침을 출력한 경우나 전자화일로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표준분석지침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미흡”로 평가 - 분석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분석지침에 동 물질에 대한 지침이 누락되었다면 한등급 하향 평가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p>○ 분석지침서 : 개정(비치)일시, 분석항목(분석을 실제 시행하는 항목만 포함가능), 분석방법(기구, 시약종류, 시약 %함유량, 분석과정, 표준시약 제조방법, 검체처리, 분석장비 조건), 결과 계산방법 등이 포함</p>			

A.1.1.3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 평가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10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6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검진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장비의 정확한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매뉴얼을 확보하는 등 기기 유지상태 평가</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모두 비치하고 내용이 적정함 - 6점 :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비치하였으나, 일부장비에 대한 지침이 누락되거나 지침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2점 :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분석과정을 반영한 장비 사용매뉴얼을 전자문서 또는 유인물 형태로 비치함 - 원자흡광분광광도기(AA),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 분석자 면담 결과 동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매뉴얼에는 작동순서, 장비사용법(한글 작성), 장비관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누락되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장비판매회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그대로 비치하는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평가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A.1.1.4	진단검사 시료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채취시료의 냉장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여부 확인	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진단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보관, 운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침서 유무를 평가하여 진단검사의 질 향상</p> <p>○ 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서 보유 - 6점 :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서는 없으나 외부기관에서 작성한 지침서를 보유(활용)하고 있음 - 2점 :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없음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직원(임상병리사) 면담 결과 동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지침서에는 객담, 소변, 혈액 등 모든 검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침서 평가 시 즉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침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A.1.1.5	폐활량검사 표준 매뉴얼 보유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폐활량검사 매뉴얼 보유 여부 확인	폐활량검사 매뉴얼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폐활량검사 매뉴얼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폐활량검사 매뉴얼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특성에 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및 활용여부 확인</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비치 - 6점 : 부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비치 - 2점 : 표준매뉴얼 없음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활량 검사직원(담당자)면담 결과 동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1개 등급 하향 평가 - 공단의 정도관리 교재 자체를 비치하거나 외부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비치한 경우는 표준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흡"로 평가 <p>○ 표준매뉴얼 : 폐활량검사의 목적 및 표준화 검사방법을 순서에 따라 설명, 검사에 필요한 피검자의 검사자세 설명, 바른 교정방법에 대한 설명 여부 등이 포함</p> <p>※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폐활량검사지침'을 기반으로 기관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p>		

A.1.1.6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평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10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6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실험실 안전보건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에 따른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고, 동 지침에 따라 장비 및 설비 점검을 양호하게 실시 - 6점 :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 2점 :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직원 면담 결과 동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실험실 안전점검일지에 점검자의 성명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주사바늘에 의한 사고 : 병원관리지침에 포함되어 있어 본 평가에서 제외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A.1.2	업무관리체계	취득 점수	
A.1.2.1	업무관리체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관리체계의 적정성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적정	<input type="checkbox"/> 20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일부 미흡	<input type="checkbox"/> 12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미작성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검사, 분석 및 진찰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확인</p> <p>○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기록물이 매년 “문서화”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작성으로 평가 <p>○ 조직도에 따른 업무분장은 특검기관 운영 총괄책임자, 업무별(검사, 분석, 진찰 및 관리 등) 책임자 및 담당자로 구분하여 분장업무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분장에서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p>○ 인사이동, 퇴사 등 업무분장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에 변경 조치하여야 함 (변경 미실시 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및 업무분장,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인사기록부 등 관련서류 확인 <p>○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관리체계를 근로자(수검자)가 확인 할 수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담당자별 업무, 연락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한단계 하향평가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A.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취득 점수	
A.2.1.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업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9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4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6점	<input type="checkbox"/> 3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가 3점	<input type="checkbox"/> 20	
	합산점수가 0점 (자체분석 기관)	<input type="checkbox"/> 10	
	합산점수가 0점 (자체분석 미 실시 기관)	<input type="checkbox"/> 0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대상업무, 유해인자 및 대상자 선정 등)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등 산업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확보를 유도하기 위함</p> <p>○ 법정 필수 인력 외에 산업보건분야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분석사를 제외한 필수 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중 산업보건분야 전문자격 취득 여부를 평가</p> <p>- 평가대상은 지정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동 평가항목에서 제외</p> <p>○ 전문인력 추가 확보 또는 전문자격 취득 점수 기준</p> <p>- 9점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전문간호사</p> <p>- 6점 : 산업위생관리기사</p> <p>- 3점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p> <p>※ 동일인이 복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자격만 인정</p> <p>○ 모든 지정인력(고용부 신고기준)에 대하여 평가</p> <p>- “지정인력 이외 전문인력 추가의 경우” 업무분장에 따라 관련 업무 이행이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대상 기간의 1/2 이상 기간 동안 고용 및 자격 유지가 확인되어야 함</p> <p>- 해당기관의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련 서류를 확인</p> <p>○ 생물학적 노출분석을 외부에 의뢰하는 기관(자체분석 미 실시 기관)은 한단계 하향 평가</p>			

A.2.2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		취득 점수
A.2.2.1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보유 수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업보건분야 종사경력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5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30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3년 이상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8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이 평균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6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종사자의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을 평가하여 풍부한 경험에 따른 지식과 응용력을 가진 인력을 보유토록 유도함으로써 검진 결과의 신뢰성 제고</p> <p>○ 평가 최초 실시일 기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한 고용노동부 신고인력(변경인력포함)에 대해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기간 1/2이상 근무자 포함 <p>○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 :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자격증을 유지하여 종사한 경력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건분야 종사 경력은 4대 보험 등 경력 증빙 문서를 통하여 확인 <p>○ 개인별 최대 경력 인정 상한은 10년으로 함</p> <p>예) 종사자 3명 중 1명은 15년, 2명은 1년 경력인 경우 : (10년+1년+1년)/3명 = 4년</p>			
A.2.2.2	전문 인력 고용 기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전문 인력 고용 기간	현 소속기관의 고용 기간이 평균 5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0	
	현 소속기관의 고용 기간이 평균 3년 이상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2	
	현 소속기관의 고용 기간이 평균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토록 유도하여 검진결과의 신뢰성 제고</p> <p>○ 평가 최초 실시일 기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신고인력(변경인력포함)에 대해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부서 경력 1년 이상인 자가 현소속 검진기관의 특수건강진단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종사한 경력 포함 - 평가 대상기간 1/2이상 종사자(계약직 포함) 포함 - 해당기관의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련 서류를 확인 <p>○ 개인별 최대 경력 인정 상한은 10년으로 함</p> <p>예) 종사자 3명 중 1명은 15년, 2명은 1년 경력인 경우 : (10년+1년+1년)/3명 = 4년</p>			

A.2.3	직원 교육, 훈련 (내외부)	취득 점수	
A.2.3.1	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문서 보유 여부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노력 정도를 평가</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평가기간 동안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6점 : 평가기간 동안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았으나,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2점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입증미흡한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은 평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신고 인력(변경 인력 포함) 모두를 포함 - 평가 대상 기간 1/2이상 종사자 포함 - 교육계획에 따른 실행이 부진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A.2.3.2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문교육 이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외부교육 참여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외부교육 참여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외부교육 참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노력 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모든 전문의가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 6점 : 일부(50% 이상) 전문의가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 2점 : 일부(50% 미만) 전문의가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인정 기준은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 - 전문교육이라 함은 보수교육 등 법정 교육 및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 산업보건 및 의학 관련 교육을 의미함 - 교육 대상은 평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신고 인력(변경 인력 포함) 모두를 포함 - 평가 대상기간 1/2이상 종사자 포함 			

A.2.3.3		외부 전문교육 참여(의사 인력 제외)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자 교육 이수(의사 인력 제외)	외부 전문교육 발굴률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외부 전문교육 발굴률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외부 전문교육 발굴률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노력 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모든 인력이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 6점 : 일부(50% 이상) 인력이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 2점 : 일부(50% 미만) 인력이 외부 전문교육에 평가기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인정 기준은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 - 전문교육이라 함은 보수교육 등 법정 교육 및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 산업보건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의미 - 교육 대상은 평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신고 인력(변경 인력 포함) 모두를 포함(계약직 포함) - 평가 대상기간 1/2이상 종사자(계약직 포함) 포함 			

A.2.3.4		내부 직무교육 실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내부 직무교육 실시여부	내부 직무교육 실시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내부 직무교육 실시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내부 직무교육 실시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에 관련하는 인력이 적절한 내부 직무교육을 받는 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매년 3회 이상 실시 - 6점 :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2점 :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매년 1회 미만 실시하거나, 미실시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종사자는 평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신고 인력(변경 인력 포함) 모두를 포함(계약직 포함) - 평가 대상기간 1/2이상 종사자(계약직 포함) 포함 - 1회의 기준은 1일 1시간 이상(전체인력의 80%이상 참석)의 교육을 의미(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은 제외하며, 특수건강진단업무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한) -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 중 평가기간내에 교육을 1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미흡'로 평가함 			

A.2.3.5		학술대회 참여정도 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산업보건분야 학술대회 참여 정도	학술대회 참여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학술대회 참여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학술대회 참여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학술대회 참석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전체 인력의 50% 이상이 참여한 경우 - 6점 : 전체 인력의 25% 이상~50%미만이 참여한 경우 - 2점 : 전체 인력의 25% 미만이 참여한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참여는 년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직무교육(4.2~4.4)을 제외한 산업보건 분야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으로 해당기관에 재직 중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사람(학술대회 등에 참여 후 퇴사한 사람을 포함)을 의미함. - 학술대회를 보수교육 목적으로 참석한 경우는 제외함(보수교육 이수점수를 제외하고 인정) - 전체 인력이란 평가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신고 인력(변경 인력 포함) 모두를 포함 			

A.2.3.6		소속인력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진기관 소속인력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의 적정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10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검진기관 소속인력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소속된 모든 인력에 대해 검진을 실시함 - 6점 :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90% 이상~100% 미만에 대해 실시 - 2점 :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소속된 인력의 90% 미만에 대해 실시함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음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A.3.1	고성능 장비 추가 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취득 접수	
A.3.1.1	고성능 장비 추가 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고성능 장비의 확보 및 유지, 관리의 적정성	고성능 장비를 확보하고,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	□ 40	
	선택검사 장비를 확보하고,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	□ 24	
	고성능 장비 및 선택검사 장비 미확보	□ 8	
<p>○ 평가목적 :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을 위한 고성능 장비와 2차 선택 검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점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을 위한 고성능 장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 - 24점 : 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이하 “선택검사”)에 해당하는 장비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 - 8점 : 고성능 장비 및 선택검사 장비 미확보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고성능 장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3. 장비기준’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장비 (^자광전광도계, ^거원자흡광광도계, ^나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성능 장비를 1개 이상 보유하고거나 추가 확보한 경우 적정한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흡광광도계(AAS)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 (ICP/MS), 수은분석기(추가)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 검출기 추가 확보 (MSD, ECD, NPD),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추가 확보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검사 장비 중 「종이검사기, 24시간 혈압계, 24시간 심전도계」를 모두 확보한 경우 24점으로 평가 - 모든 평가 대상 장비는 평가 대상기간에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구매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24점 이하로 평가 <li style="padding-left: 20px;">* 위탁기관보다 한단계 낮게 평가함 - 고성능장비를 확보하였으나, 유지관리 부적정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선택검사 장비를 확보하였으나, 유지관리 부적정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타 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비 및 2년미만 리스사용 불인정 - 단, 지정측정기관 평가시 불인정받은 고성능장비(예, HPLC 등)의 경우는 인정 			

A.3.2	법정 시설 및 장비 구비 및 성능	취득 점수	
A.3.2.1	검사 및 분석 장비 대장관리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 및 분석 장비 대장 관리의 적절성	장비대장 관리가 적정한 경우	□ 10	
	장비대장 관리가 보통인 경우	□ 6	
	장비대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	□ 2	
<p>○ 평가목적 : 검사 및 분석장비 대장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는지 평가</p> <p>○ 주요 검사 및 분석 장비에 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모델의 장비별 (구입년월일이 동일한 장비)로 해당 장비의 시리얼번호, 용도, 구입·수리 및 점검일자 등이 기록된 장비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장비사진 포함)</p> <p>- 대상 분석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장비임</p> <p>- 장비는 출장검진과 내원 검진용 장비를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어야 함.</p> <p>○ 평가기준 :</p> <p>- 10점 : 모든 장비의 대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p> <p>- 6점 : 80% 이상~100%미만의 장비의 대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p> <p>- 2점 : 80% 미만의 장비의 대장 등에 대한 기록유지가 적정한 경우</p>			
A.3.2.2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필름/스크린 시스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내부정도관리용 Densitometer 측정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적정함	□ 5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보통임	□ 3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미흡함	□ 1	
<p>○ 평가목적 : 흉부사진 화질향상을 위해서는 Densitometer(농도, 밀도계)를 실제 사용하여 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내부정도관리가 필요한 바, 유지보수의 적정여부 평가</p> <p>○ 평가기준 :</p> <p>- 5점 : 모든 촬영 장비에 대해 주 1회 이상 Densitometer 측정하고 결과 기록유지</p> <p>- 3점 : 모든 촬영 장비에 대해 월 1회 이상 Densitometer 측정하고 결과 기록유지</p> <p>- 1점 : 일부 장비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거나 월 1회 미만 측정하는 경우</p> <p>○ 평가방법 :</p> <p>- 모든 기관은 A.3.2.2, A3.2.3 항목 중 해당하는 장비 보유여부에 따라 평가</p> <p>- 필름/디지털시스템 중 한가지 장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는 3.23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p>			

A.3.2.3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디지털 시스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 흉부관독용 모니터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디지털 시스템)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흉부방사선 사진촬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흉부촬영 시 사용하는 디지털 장비(CR리더기, DR디텍터, 흉부관독용 모니터 등)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유지보수의 적정여부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① 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6개월에 1회 이상) ②흉부관독용 모니터(3월 1회 이상) : ①,② 장비 모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결과표 비치 - 3점 : ① 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연 1회 이상) ②흉부관독용 모니터(6월 1회 이상) : ①,② 장비 모두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결과표 비치 - 1점 : ① CR리더기 또는 DR 디텍터(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음) ②흉부관독용 모니터(6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음) : ① ② 장비중 하나만 실시하거나 모두 실시하지 않는 경우 <p>○ 평가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관은 A.3.2.2, A3.2.3 항목 중 해당하는 장비 보유여부에 따라 평가 - 필름/디지털시스템 중 한가지 장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는 3.2.2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 		

A.3.2.4	폐활량 검사기 보유 및 유지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적정한 장비보유 및 유지여부 확인	규격 사항 모두 만족	<input type="checkbox"/> 5
	규격 사항 일부 만족	<input type="checkbox"/> 3
	규격 사항 만족이 미흡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폐활량 검사기에 대한 현황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규격 사항을 모두 만족 - 3점 : 규격 사항 중 50% 이상(4가지 항목 이상) 만족 - 1점 : 규격 사항 중 50% 미만(4가지 항목 미만) 만족 <p>○ 규격: ①유속(최소 0.5 L/sec-12 L/sec) 및 용적에 대한 보정 가능여부 ②1회용 필터 체결 가능여부 ③온도/습도/기압 입력 가능여부 ④유량-용적 곡선 및 용적-시간 곡선이 최소 3개 이상 저장가능 여부 ⑤예측치(식)의 선택가능 여부 ⑥외삽용적(절대치 또는 백분율) 확인 가능여부 ⑦일초량, 노력성폐활량, 일초율, 중간호기유속, 호기시간 확인 가능여부</p>		

A.3.2.5		
폐활량 검사기 보정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폐활량 검사기 보정의 적절성 확인	폐활량 검사기 보정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폐활량 검사기 보정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
	폐활량 검사기 보정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폐활량 검사기 보정현황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평가방법의 조건(온도, 습도, 기압) 모두를 고려하여 보정 실시 - 3점 : 평가방법의 조건(온도, 습도, 기압) 중 일부만 고려하여 보정 실시 - 1점 : 보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p>○ 평가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도, 습도, 기압 등 3가지 조건이 적용된 상태에서 일회용 인라인 필터 체결 후 보정 시행여부 확인 - 검사기의 보정은 폐활량 검사가 있는 날마다 검사 전 1회 이상 실시 (검사 중 온도가 3℃이상 변하거나 검사장소를 옮길 경우 추가 실시) 		

A.3.2.6		
폐활량 검사기 감염예방 조치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감염 예방을 위한 폐활량 검사기 소독 상태 확인	폐활량 검사 장비의 감염예방 조치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10
	폐활량 검사 장비의 감염예방 조치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6
	폐활량 검사 장비의 감염예방 조치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진단 기관이 검사장비의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의 이행정도를 확인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장비 소독 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있으며, 매뉴얼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소독 실시 - 6점 : 장비 소독 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있으나, 매뉴얼에서 정한 주기를 따르지 않고 소독 실시 - 2점 : 매뉴얼대로 소독을 하고 있지 않고, 대장을 미비치함 <p>○ 평가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장비 사용설명서에 따른 주기적 청결 및 소독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검사담당자 시연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A.3.2.7		
폐활량 검사시 일회용품 사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적정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 및 일회용 코마개 사용	폐활량 검사 일회용품 사용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폐활량 검사 일회용품 사용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폐활량 검사 일회용품 사용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진단 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확인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성능 기준(성능성적서)에 따른 일회용 인라인 필터를 사용하고, 성능성적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일회용 코마개를 사용하는 경우 - 3점 : 성능 기준(성능성적서)에 미달하는 일회용 인라인 필터를 사용(성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또는 일회용 코마개를 재사용하는 경우 - 1점 :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일회용 인라인 필터를 사용(성능성적서가 없는 경우) 하거나 일회용 인라인 필터 및 일회용 코마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A.3.2.8		
폐활량 검사실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폐활량 검사실의 적정성 확인	폐활량 검사실 및 설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10
	폐활량 검사실 및 설비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6
	폐활량 검사실 및 설비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인 폐활량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폐활량 검사실의 적정성을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이 설치되고, 적절한 환기 및 소독 시설을 보유한 경우 - 6점 :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이 설치되고, 환기 및 소독 시설을 일부 보유한 경우 - 2점 :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을 미보유한 경우 <p>○ 환기 및 소독시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활량 검사실 창문 설치 여부 또는 환기시설(외기 배출 구조) 설치 여부 - 폐활량 검사실 내부에 자외선 살균 장치 등 소독시설 설치 여부 <p>(자외선 살균장치 등 소독시설은 근무 중에 켜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원내에 설치된 검사실에 대해서만 적용)</p>		

A.3.2.9	청력 검사실 및 부스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 성능 확인	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성능이 양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성능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성능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청력검사실과 오디오부스 성능을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청력검사실에 별도의 오디오 부스를 갖추고 있으며, 부스의 차폐성능이 양호한 경우 - 6점 : 청력검사실에 별도의 오디오 부스를 갖추고 있으나, 부스의 차폐성능이 보통인 경우 - 2점 : 청력검사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 <p>※ 부스의 차폐성능이 양호한 경우란 정기적(1년 1회 이상)으로 내·외부 배경소음을 측정하여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가 제조사 상업용 수준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기준에 따른 최대허용 소음수준에 적합한 경우를 말함</p> <p>○ 평가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력검사실은 다른 장소와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며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으로 출입 - 오디오 부스는 5cm 이상 벽과 떨어져 있어야 함 - 상업용 수준의 의미는 부스내의 배경소음이 설치시점의 성적서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정기적(1년 1회 이상)으로 내·외부 배경소음을 측정하여 기록·유지하지 않은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A.3.2.10	청력 검사기 보정점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기의 보정점검 실시 여부 확인 (최근 1년 이내)	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
	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청력검사기의 보정점검 실시여부 평가</p> <p>○ 평가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기능보정과 음향보정점검을 모두 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 3점 : 기능보정과 음향보정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된 경우 - 1점 : 기능보정과 음향보정 중 한 분야라도 보정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p>○ 평가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보정 점검 항목 내용들이 점검표로 이루어져 청력검사를 실시하는 날마다 점검 실시 여부 확인 - 음향보정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업체가 실시한 음향보정점검 보고서를 확인 		

A.3.2.11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사용 대장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 장비별 장비 사용 대장 평가	장비 사용대장 작성 및 관리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장비 사용대장 작성 및 관리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장비 사용대장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분석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분석장비의 상태, 분석량, 분석물질 등의 정보관리상태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장비사용대장을 분석실 내에 비치하고 작성하는 등 양호하게 활용하고 있음 - 3점 : 장비사용대장을 비치하였으나 기록상태가 일부 미흡함 - 1점 : 장비사용대장을 비치하지 않음 <p>○ 대상장비 : 원자흡광분광광도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p> <p>※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p>		
A.3.2.12	진단검사 시료저장의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진단검사 시료저장 과정의 적절성 파악 (A.1.1.4의 실행여부)	진단검사 시료저장 방법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진단검사 시료저장 방법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
	진단검사 시료저장 방법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진단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보관, 운반 등의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평가하여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80% 이상이 적정한 경우 - 3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이상~80% 미만이 적정한 경우 - 1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 미만이 적정한 경우 <p>※ 평가대상 선정 : 혈액, 소변채취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 중 50인 이상 사업장 5개소와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 총 10개소를 선정</p>		

A.3.2.13		
폐기물 처리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 중 배액(폐액) 및 생체시료 폐기물 처리 방법의 적정 여부	폐기물 처리방법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폐기물 처리방법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폐기물 처리방법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로 인한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노력 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기관에 별도의 처리설비가 있거나, 폐기물 수거통이 별도로 있고 외부업체에 처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 3점 : 폐기물 수거통이 있으나, 평가기간 동안 외부업체에 처리의뢰 실적이 없는 경우 - 1점 : 폐기물 수거통이 없고, 관련 처리실적도 없는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수거통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단계 하향 평가 - 지정된 장소가 아닌 복도, 계단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단계 하향 평가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A.3.2.14		
비상용 샤워 및 세안설비 설치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 설치 여부	모든 설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10
	일부 설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6
	모든 설비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되어 신체에 접촉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용 샤워설비와 세안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의 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 노력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 - 6점 : 비상용 샤워장치 또는 세안설비 중 한가지 설비만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 - 2점 :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를 모두 보유(설치)하지 않은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긴급상황에서 10초 이내에 도달 가능한 곳)에 설치되지 않거나,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 싱크대, 세면대 등의 설비, 가까운 화장실 등은 실험실 세안설비로 불인정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A.3.2.15	가스용기 전도 방지장치 및 저장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여부	가스용기 전도 방지조치와 저장이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5
	가스용기 전도 방지 조치와 저장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가스용기 전도 방지 조치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가스용기가 전도될 경우 폭발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 및 별도의 공간 보관이 모두 적절한 경우 - 3점 :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 또는 별도의 공간에 저장 조치가 미이행한 경우 (별도의 공간에 저장하였으나,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점 :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 및 별도의 공간 저장 미이행한 경우 		

A.3.2.16	분석용 시약 보관상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용 시약 보관 상태 평가	시약 보관상태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시약 보관상태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시약 보관상태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약을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실험실 내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실험실 종사자가 이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또는 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방지노력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시약 보관용 전용설비(필터설비가 설치된 시약장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시약장)에 보관함 - 3점 : 시약 보관용 전용설비는 없으나, 실험실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약을 보관함 - 1점 : 별도 설비 없이 실험실 내에 시약을 보관함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터를 제조사의 교체주기(예: 1년에 1회 이상)내 교체하지 않거나 분석시약 보관상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지난 시료(표준시약) 보관 한단계 하향 평가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A.3.2.17	분석장비 국소배기장치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 장비별 국소 배기장치 확인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유기화합물과 금속을 취급하는 실험실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실태를 파악하고 제어풍속을 확인 하는 등 화학물질의 노출예방 노력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위치나 성능이 적절한 경우 - 3점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위치나 성능보완이 필요한 경우 - 1점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장비를 가동하는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흡광분광기 등 분석 장비별로 실험실용 후드가 설치되어야 하며, 분석실 내부 흡후드의 제어풍속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제어풍속 : 0.4m/s) * 슬라이드 높이를 30cm 높이로 개방해서 제어풍속 측정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A.3.2.18	보호용구 구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보호용구 구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보호용구 구비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보호용구 구비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해당 보호용구를 착용함으로써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 사고 및 건강장애 발생 방지노력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모든 보호용구를 실험실 근무인원수에 맞도록 구비하고 있는 경우 - 3점 : 모든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으나, 보유개수가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1점 : 일부 보호용구를 구비하고 있거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전용 보관함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단계 하향 평가 -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 		

A.3.2.19	냉장보관 설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냉장고, 이동식 보관 장비 활용 여부	냉장보관 장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냉장보관 장비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냉장보관 장비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시료운반과 보관은 냉장설비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이러한 냉장설비에 검체 이외에 각종시약, 음식물, 음료 등을 보관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노력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실험실에 냉장고가 있고 출장검진 시 사용하는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 3점 : 실험실에 냉장고가 있고 출장검진 시 사용하는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가 있으나 관리가 부적절함(또는 실험실에 냉장고가 없으나 출장검진 시 사용하는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 1점 : 실험실에 냉장고가 없거나 출장검진 시 활용하는 아이스박스가 없음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검진 시 아이스박스(ICE BOX)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이 있어야 하며 ICE PACK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A.3.2.20	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출장검진 시 원심분리기 활용 여부	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원심분리기 보유 및 사용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혈액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 냉장 보관해야 하며, 출장검진시 혈청을 적절하게 보관하는지 여부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출장 검진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출장 검진시에는 항상 사용하고 있음 - 3점 : 출장 검진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출장 검진시 사용하지 않음 - 1점 : 출장 검진용 원심분리기가 없음 		

A.3.2.21	저울 검정 및 교정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저울 검정 및 교정 평가	저울 검정 및 교정 실시상태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저울 검정 및 교정 실시상태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저울 검정 및 교정 실시상태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표준용액 등의 시약 제조시 저울을 이용한 계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석 오차가 증가하게 되므로 저울에 대한 정기적인 검·교정 실시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보유중인 모든 저울에 대한 검정 및 교정 실시 - 3점 : 보유중인 일부 저울에 대한 검정 및 교정 실시 - 1점 : 보유중인 모든 저울에 대한 검정 및 교정 미실시 <p>※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중량분석을 위한 무진동테이블이 설치되어야 함(미설치 시 한단계 하향 평가)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가·감점 항목)

A.4.1	산업안전보건 관련 포상 수여 실적 (가점)	취득 점수	
<p>○ 평가기간('17.5.1~'18.12.31) 동안 기관 또는 소속 인력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포상 수여 실적을 평가</p> <p>① 대통령 포상 : 5점/건 ② 국무총리 포상 : 4점/건</p> <p>③ 고용노동부 장관 포상 : 3점/건 ④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포상 : 2점/건</p> <p>⑤ 고용노동청·지청장, 공단(교육원장,인증원장,본부장,지사장), 지자체(시·도·군·구), 민간단체상(산업보건분야 학회에 한함) : 1점/건</p> <p>(예: 직업환경의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p> <p>※ 최대 취득 가능 점수 : 10 점</p> <p>○ 평가방법 : 평가 당일 피평가 기관에서 제출한 정부포상 수여 실적을 확인</p>			

A.4.2	업무정지 처분 (감점)	취득 점수	
<p>○ 평가기간('17.5.1~'18.12.31)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개월 수에 따라 감점 실시</p> <p>- 업무정지 처분 개월수 별로 -15점 적용, 최대 -80점</p> <p>○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의 업무정지 처분 실적 집계</p>			

A.4.3	시정조치·경고 처분 (감점)	취득 점수	
<p>○ 평가기간('17.5.1~'18.12.31)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시정조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건별 합계에 따라 감점 실시</p> <p>-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별로 -2점 (최대 -20점)</p> <p>○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의 업무정지 처분 실적 집계</p>			

A.5 종합화 (가점 항목)

A.5.1	종합기술지원 (최대 +10점)	취득 점수																	
<p>○ 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건강진단과 관련된 사전 조사, 사후관리조치 및 작업환경개선 등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p> <p>※ 산업안전보건관련 전문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p> <p>- 동일기관 내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종합기술지원 실적을 평가</p> <p>※ 동일기관간의 종합기술지원은 50% 인정 (0.5점/건)</p> <p>- 평가기간 동안 ①사전조사(신규 특검 실시 대상), ②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직업성질병 C₁, D₁, 야간작업 C_N, D_N 대상)의 실적별 점수를 합산</p> <table border="1" data-bbox="229 943 1401 1151"> <thead> <tr> <th>구 분</th> <th>4회 이상</th> <th>3회</th> <th>2회</th> <th>1회</th> </tr> </thead> <tbody> <tr> <td>① 사전조사</td> <td>+ 5점</td> <td>+ 4점</td> <td>+ 3점</td> <td>+ 2점</td> </tr> <tr> <td>② 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td> <td>+ 5점</td> <td>+ 4점</td> <td>+ 3점</td> <td>+ 2점</td> </tr> </tbody> </table> <p>○ 종합기술지원 관련 업무 협조체계* 및 실적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모든 실적은 사진, 참석자 서명 등 시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p> <p>-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실시한 경우 동 평가항목을 0점 처리</p> <p>* 상호 업무 협조 범위, 사업장 지원 계획, 개인 또는 사업장 정보 보안 방안 등</p>					구 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① 사전조사	+ 5점	+ 4점	+ 3점	+ 2점	② 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	+ 5점	+ 4점	+ 3점	+ 2점
구 분	4회 이상	3회	2회	1회															
① 사전조사	+ 5점	+ 4점	+ 3점	+ 2점															
② 사후관리조치 또는 작업환경개선조치	+ 5점	+ 4점	+ 3점	+ 2점															

B. 업무 성과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B.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절차 수립 및 시행	취득점수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검대상자 선정 등 사전조사절차 보유 여부	사전조사 절차가 적절한 경우	□ 30	
	사전조사 절차가 보통인 경우	□ 18	
	사전조사 절차가 미흡한 경우	□ 6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대상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검기관 내부의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확립과 교육(훈련) 정도를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절차서를 작성하여 문서화¹⁾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1)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내부품의(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를 포함한 문서로 등록한 경우를 말함.</p> <p>○ 동 항목 평가시에 특검기관에 소속된 모든 특수건강진단 의사에 대하여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점 : 사전조사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음 - 18점 : 사전조사 검토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음 - 6점 : 사전조사 검토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음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행과정의 적절성 파악 (B.1.1.1 실행여부)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적절한 경우	□ 40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보통인 경우	□ 24	
	사전조사 실행과정이 미흡한 경우	□ 8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에 관한 기관내부의 표준운영절차가 현장에서 유효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80% 이상이 적절한 경우 - 24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이상~80% 미만이 적절한 경우 - 8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50% 미만이 적절한 경우 			

B.1.2	증상문진 및 기록관리	취득 점수	
B.1.2.1 문진의 적정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개인표 등을 통한 과거 직력, 문진, 시진 검사 여부 확인	문진과정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문진과정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문진과정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수검자)의 작업 내용 및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진찰(문진) 과정에서 근로자(수검자)와 의사와의 의사소통 등 문진부분을 평가</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 건강진단 개인표에 과거직업력, 문진이 모두 기입되어 있으며 문진표가 작성되어 있고, 문진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동 내용을 파악 또는 파악된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음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80% 이상이 적정한 경우 - 12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50%이상 ~ 80% 미만이 적정한 경우 - 4점 : 조사 대상 사업장 검진자의 50% 미만이 적정한 경우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확인 등을 통한 이학적 검사 실시유무와 시행의 적절성 평가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양호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이 해당 근로자(수검자)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적절한 이학적 검사수준 평가</p> <p>○ 평가방법 : 유해인자별로 이경 검사(좌,우), 진동 노출군에 대한 손톱압박검사 통각, 진동각, 악력, 호흡기 및 순환기 고위험군에 대한 청진, 피부질환에 대한 시진, 비강 및 인두 검사, 레이노 현상진찰, 안과 진찰 등에 대한 기록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80% 이상이 있는 경우 - 12점 :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 이상~80%미만이 있는 경우 - 4점 :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 미만이 있는 경우 			

B.1.3	청력검사	취득 점수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 확인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양호한 경우	□ 20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보통인 경우	□ 12	
	청력검사결과의 불일치 여부가 미흡한 경우	□ 4	
<p>○ 평가목적 : 직업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소음성 난청을 표적으로 하는 특수 건강진단 항목인 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측정함으로써, 해당 검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수준) 평가</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기관별로 소음에 대한 2차 검진항목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과거 2회 이상 청력 특수건강진단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불일치성 조사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10% 미만 불일치 - 12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10%이상 ~ 20% 미만 불일치 - 4점 : 조사 대상 근로자의 20% 이상 불일치 <p>* 불일치 : 전체 주파수별 청력검사결과 중에서 단 한 개라도 10 dB 이상 좋아진 경우.</p>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확인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모두 적절한 경우	□ 20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보통인 경우	□ 12	
	청력검사 시기 및 안내가 미흡한 경우	□ 4	
<p>○ 평가목적 : 직업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소음성 난청을 표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항목인 청력검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실제 검사시기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검진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질(수준) 평가</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력검사가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당 사업장(부서)에 통보하는지를 확인(안내 자료, 문서 등으로 확인)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조사 대상 2개 사업장(부서) 모두 적절 - 12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중 1개소만 적절 - 4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모두 부적절 <p>※ 적절의 의미 : 안내 및 검사시기가 모두 적절한 경우(검사시기나 안내중 1개만 적절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우로 평가)</p>			

B.1.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취득 점수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를 위한 지침서 보유 여부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이나 생물학적 노출지표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기, 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바, 특수건강진단의 질(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침 보유여부 확인</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내부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12점 : 공단 지침 등 외부기관의 지침이 있고 내부지침은 없는 경우 - 4점 : 지침서가 없는 경우 <p>○ 지침서 : 지침서에는 시료채취에 대한 업무분장, 채취시기 및 방법, 수거 방법, 보관방법, 의뢰 방법(의뢰항목이 있는 경우),사업장 안내 사항 등이 포함</p>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요원이 사업장 방문 후 직접시료 채취여부 및 채취시간 적정여부 확인	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생물학적 검사시료 채취가 부적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생물학적 노출지표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을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수준)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기록이 모두 적정하며, 유선으로 통화한 2개 사업장 모두 적절한 방법으로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12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중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유선으로 통화한 1개 사업장만 적절한 방법으로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4점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시료채취 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유선으로 통화한 사업장 모두 시료 채취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B.1.5	판정, 검사항목 선정 및 의학적소견 설명	취득 점수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 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의 적정성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5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건강진단결과 판정 방법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5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결과판정의 프로세스가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미만 - 1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이상~10%미만 - 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10% 이상 <p>○ 적합 : 결과판정에 임상 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정, 관찰, 생물학적 노출지표, 문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모두 활용해 판정한 경우</p> <p>○ 지침서 : 임상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정,관찰, 생물학적 노출지표 결과, 문진,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고려한 일련의 process로 구성(공단외의 실무지침이 아님)</p>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평가(C1,C2,C _N ,D1,D2,D _N) 방법의 적정성 여부	업무관련성 평가(판정)가 양호함		<input type="checkbox"/> 25
	업무관련성 평가(판정)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업무 관련성 평가(판정)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5
<p>○ 평가목적 :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미만 - 1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5% 이상~10% 미만 - 5점 :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건수(근로자수)가 10% 이상 <p>○ 적합 :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행태 관찰, 문진(직업력, 노출기간, 공정, 취급방법 등 작업환경 부분) 결과를 모두 활용해 판정한 경우</p>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적합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업무 적합성 평가가 양호함	<input type="checkbox"/> 25
	업무 적합성 평가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업무 적합성 평가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5
<p>○ 평가목적 :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결정이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규정된 판정지침에 따른 실시여부 확인</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적정성 80%이상) - 1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함(적정성 50% 이상~80%미만) - 5점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적정성 50%미만) <p>○ 지침서 : 기관에서 보유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서를 확인하여 해당지침에 맞도록 수행하는지 확인(주요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별 판정기준을 별도로 작성가능)</p>		

B.1.5.4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항목의 적절성	검사항목이 선정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5
	검사항목이 선정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5
	검사항목이 선정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p>○ 평가목적 : 1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수검사항목이고, 2차 검사항목중에서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시 실시하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검사항목이나 적정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필수검사항목을 누락시키는 바, 적정실시여부 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고,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 사유가 모두 기록 - 1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 사유 기록이 80% 이상~100%미만 작성 - 5점 : 필수 검사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미실시 사유 기록이 80% 미만 작성 <p>○ 검사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검사항목은 모두 필수, 2차 검사항목 중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시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수 검사임(이학적 검사는 문진항목에서 평가) 		

B.1.6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	취득 점수	
B.1.6.1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검사 대상자에게 해당 검사를 적절하게 실시토록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적절한 경우	□ 20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보통인 경우	□ 12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미흡한 경우	□ 4	
<p>○ 평가목적 : 2차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해당 검사를 실시토록 유도하여 적절한 건강 관리구분 판정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지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2차 검사 실시 안내 공문 수신율이 90% 이상 - 12점 : 2차 검사 실시 안내 공문 수신율이 70% 이상 ~ 90% 미만 - 4점 : 2차 검사 실시 안내 공문 수신율이 70% 미만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 동안 판정불가(U판정)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확인하며, U판정 사업장이 부족한 경우 2차 검사 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간 동안 U판정 사업장에 대하여 판정불가 사유(해당 근로자의 퇴직 등)를 확인하여 기록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확인하며, 기록 문서가 없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평가 기간의 50% 미만 작성, 필수 기록 사항 누락, 거짓 작성 등 포함) <p>* 필수 기록 : 확인 날짜, 사업장 담당자, 기관 담당자(확인자), 2차 검사 미실시 사유, 기타 특이사항 등</p>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B.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폐활량검사능력	취득점수	
B.2.1.1	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견갑골이 폐야 밖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5	
	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흉부방사선 사진 환자자세의 견갑골 위치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0.5	
<p>○ 평가목적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폐야 밖 위치</p> <p>- 1.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폐야 밖 위치</p> <p>- 0.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폐야 밖 위치</p>			
B.2.1.2	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의 정상흡기 정도를 쇄골중심부에서 수직선을 그어 그 선이 우측횡격막과 만나는 점이 제10 늑골 후방의 하연보다 낮은지 평가	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5	
	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흉부방사선 사진의 흡기정도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0.5	
<p>○ 평가목적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낮음</p> <p>- 1.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낮음</p> <p>- 0.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낮음</p>			

B.2.1.3	홍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홍부방사선 사진의 우측폐야 전체에서 폐혈관의 관찰이 폐야외측 1/3부위의 폐혈관까지 관찰이 가능한지 평가	홍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해상도·대조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5
	홍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해상도·대조도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홍부방사선 사진 우측의 투과상태·해상도·대조도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0.5
<p>○ 평가목적 : 홍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관찰이 가능함</p> <p>- 1.5점 :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p> <p>- 0.5점 :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p>		

B.2.1.4	홍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홍부방사선 사진의 좌측폐야 전체에서 폐혈관의 관찰이 폐야외측 1/3부위의 폐혈관까지 관찰이 가능한지 평가	홍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해상도·대조도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5
	홍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해상도·대조도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5
	홍부방사선 사진 좌측의 투과상태·해상도·대조도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0.5
<p>○ 평가목적 : 홍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관찰이 가능함</p> <p>- 1.5점 :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p> <p>- 0.5점 :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p>		

B.2.1.5	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 상태, 해상도, 대조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심장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	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 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적정함	☐ 2.5
	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 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보통임	☐ 1.5
	심장 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에 대한 흉부 방사선 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미흡함	☐ 0.5
<p>○ 평가목적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1.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0.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B.2.1.6	횡경막 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횡경막 하방 혈관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	횡경막 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적정함	☐ 2.5
	횡경막 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보통임	☐ 1.5
	횡경막 하방 혈관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미흡함	☐ 0.5
<p>○ 평가목적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1.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0.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B.2.1.7	횡격막 양측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양측과 전후 횡격막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	횡격막 양측과 전후 횡격막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적정함	☐ 2.5
	횡격막 양측과 전후 횡격막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보통임	☐ 1.5
	횡격막 양측과 전후 횡격막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미흡함	☐ 0.5
<p>○ 평가목적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1.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0.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B.2.1.8	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전체 추간판 공간이 잘 보이는지 평가	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적정함	☐ 2.5
	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보통임	☐ 1.5
	추간판 공간에 대한 흉부방사선사진의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가 미흡함	☐ 0.5
<p>○ 평가목적 : 흉부방사선 사진촬영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정도관리 결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2.5점 : 흉부방사선 촬영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80%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1.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이상~8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p>- 0.5점 :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에서 원내촬영 및 원외촬영 모두 합하여 60%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p>		

B.2.1.9	폐활량 검사 설문(환류)기록 파악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설문(환류)기록으로 과거의 질환 여부 등의 참고사항을 파악하는지 평가	폐활량 검사 설문(환류)기록 파악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폐활량 검사 설문(환류)기록 파악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폐활량 검사 설문(환류)기록 파악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 판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이 기관의 상황에 적절한 설문기록 활용여부 확인</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참고사항 내용 모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p> <p>- 3점 : 참고사항 내용 60% 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p> <p>- 1점 : 참고사항 내용 60% 미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거나, 파악하지 않는 경우</p>		

B.2.1.10	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검사 실시 횟수	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폐활량 검사 실시 횟수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표준 검사 방법을 활용한 반복실시여부 확인</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모두가 적절한 경우</p> <p>- 3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 이상(예: 10건 중 6건 이상) 적절한 경우</p> <p>- 1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 미만(예: 10건 중 6건 미만) 적절한 경우</p>		

B.2.1.11	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폐활량 검사의 적합성 평가	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폐활량 검사 적합성 평가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 검사방법에 따른 적합한 검사과정 및 검사결과 확인</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모두가 적절한 경우</p> <p>- 3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 이상(예: 10건 중 6건 이상) 적절한 경우</p> <p>- 1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 미만(예: 10건 중 6건 미만) 적절한 경우</p>		

B.2.1.12	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기준	평가결과
가장 큰 수치의 결과값 (노력성 폐활량 및 일초량) 과 다음 결과값의 차이, 3회 이상의 검사기록	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폐활량 검사 재현성 평가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 검사방법으로 반복하여 실시한 검사결과의 재현성 확인</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모두가 적절한 경우</p> <p>- 3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 이상(예: 10건 중 6건 이상) 적절한 경우</p> <p>- 1점 :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중 60% 미만(예: 10건 중 6건 미만) 적절한 경우</p>		

B.2.2	청각학적 검사능력	취득 점수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80 286 550 353">B.2.2.1</td> <td colspan="3" data-bbox="550 286 1410 353">청력 2차 검사 시행</td> </tr> <tr> <td data-bbox="180 353 550 421">평가내용</td> <td data-bbox="550 353 1228 421">평가기준</td> <td colspan="2" data-bbox="1228 353 1410 421">평가결과</td> </tr> <tr> <td data-bbox="180 421 550 600" rowspan="3">2차 순음청력검사 시행의 적정성 평가</td> <td data-bbox="550 421 1228 477">청력 2차 검사 시행이 적정함</td> <td colspan="2" data-bbox="1228 421 1410 477"><input type="checkbox"/> 5</td> </tr> <tr> <td data-bbox="550 477 1228 533">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보통임</td> <td colspan="2" data-bbox="1228 477 1410 533"><input type="checkbox"/> 3</td> </tr> <tr> <td data-bbox="550 533 1228 600">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미흡함</td> <td colspan="2" data-bbox="1228 533 1410 600"><input type="checkbox"/> 1</td> </tr> </table>				B.2.2.1	청력 2차 검사 시행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 시행의 적정성 평가	청력 2차 검사 시행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B.2.2.1	청력 2차 검사 시행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 시행의 적정성 평가	청력 2차 검사 시행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청력 2차 검사 시행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2차 순음청력검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2차 검사 대상자에 대한 2차 검사 전원 실시</p> <p>- 3점 : 2차 검사를 전원 실시하였으나 일부 청력검사 항목이 누락</p> <p>- 1점 : 1명 이상 2차 검사 미실시</p> <p>※ 중도 퇴사자 등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인정</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80 1171 550 1238">B.2.2.2</td> <td colspan="3" data-bbox="550 1171 1410 1238">골도 청력검사 수행</td> </tr> <tr> <td data-bbox="180 1238 550 1305">평가내용</td> <td data-bbox="550 1238 1228 1305">평가기준</td> <td colspan="2" data-bbox="1228 1238 1410 1305">평가결과</td> </tr> <tr> <td data-bbox="180 1305 550 1529" rowspan="3">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각 주파 수별 기도 역치에 따른 골도 청력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td> <td data-bbox="550 1305 1228 1384">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적정함</td> <td colspan="2" data-bbox="1228 1305 1410 1384"><input type="checkbox"/> 5</td> </tr> <tr> <td data-bbox="550 1384 1228 1462">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보통임</td> <td colspan="2" data-bbox="1228 1384 1410 1462"><input type="checkbox"/> 3</td> </tr> <tr> <td data-bbox="550 1462 1228 1529">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미흡함</td> <td colspan="2" data-bbox="1228 1462 1410 1529"><input type="checkbox"/> 1</td> </tr> </table>				B.2.2.2	골도 청력검사 수행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각 주파 수별 기도 역치에 따른 골도 청력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B.2.2.2	골도 청력검사 수행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각 주파 수별 기도 역치에 따른 골도 청력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골도 청력검사 수행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각 주파수별 기도 역치에 따른 골도청력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100%에서 골도청력 검사를 적절히 수행</p> <p>- 3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80% 이상~100%미만에서 골도청력 검사를 적절히 수행</p> <p>- 1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80% 미만에서 골도청력 검사를 적절히 수행</p>																					

B.2.2.3		기도 음차폐 검사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서 좌우 기도청력 차폐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기도 음차폐 검사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기도 음차폐 검사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기도 음차폐 검사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2차 순음청력검사서 좌우 기도청력 차폐검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서 100%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p> <p>- 3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서 80% 이상~100%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p> <p>- 1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서 80% 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p>			

B.2.2.4		골도 음차폐 검사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서 좌우 기도청력 차폐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골도 음차폐 검사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골도 음차폐 검사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골도 음차폐 검사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2차 순음청력검사서 좌우 골도 음차폐 검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평가</p> <p>○ 최근 1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서 100%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p> <p>- 3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서 80% 이상~100%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p> <p>- 1점 : 2차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서 80% 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p>			

B.2.3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능력	취득 점수	
B.2.3.1	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분석값 설명 자료 검토 결과 평가	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정도관리 설명자료 평가 결과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시 분석결과 산출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분석능력 향상 유도</p> <p>○ 최근 2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p> <p>-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p> <p>- 5점 : 최근 2회 분석정도관리(분석값) 결과 평균 100점</p> <p>- 3점 : 최근 2회 분석정도관리(분석값) 결과 평균 60점 이상~100점 미만</p> <p>- 1점 : 최근 2회 분석정도관리(분석값) 결과 평균 60점 미만</p>			
B.2.3.2	내부정도관리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관 자체 수행 분석 평가	내부정도관리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내부정도관리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내부정도관리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분석에 대한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분석능력 향상 유도</p> <p>○ 특수건강진단 기관 자체적인 분석 정도관리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내부 규정에는 운영체계, 관리책임자 지정, 정도관리 절차 및 결과처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p>- 5점 : 내부정도관리 지침이 비치되어 있고 지침대로 내부정도관리를 실시함</p> <p>- 3점 : 내부정도관리 지침은 비치되어 있으나 내부정도관리가 부적정한 경우</p> <p>- 1점 : 내부정도관리 지침 미비치 또는 내부정도관리 미실시</p> <p>○ 평가방법</p> <p>- 내부정도관리 지침에 표준시료, 분석방법, 기준값 설정 등의 내용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도관리 지침이 없는 것으로 간주</p> <p>- 시료분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한 외부기관 평가점수 반영</p>			

B.2.3.3		
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임상정도관리 참가 결과 평가	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5
	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3
	임상정도관리 참가 실적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임상검사에 대한 질관리를 위하여 임상정도관리 중 임상화학(일반화학), 진단혈액학, 면역혈청학, 요경검학, 면역측정검사 분야의 정도관리에 참가한 실적을 확인하여 수준향상 유도</p> <p>○ 특수건강진단 임상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정도관리 5개 분야(①임상화학, ②진단혈액학, ③면역혈청학, ④요경검학, ⑤면역측정검사 분야)의 정도관리 참가실적 확인</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5개 분야 모두 참가 - 3점 : 5개 분야 중 일부만 참가 - 1점 : 임상정도관리 미실시 		

B.2.3.4		
검체의 외부 의뢰체계 구축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체의 외부의뢰체계구축의 적절성 여부확인	검체 외부 의뢰체계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검체 외부 의뢰체계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
	검체 외부 의뢰체계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검체의 외부의뢰 체계구축의 적절성 여부정도를 평가</p> <p>○ 기관 자체적으로 의뢰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 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검체에 대한 외부 의뢰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거나 모든 검사를 내부에서 처리 - 3점 : (실제적으로 일부검체에 대하여 외부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검체에 대한 외부 의뢰 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의뢰검사 기록지 등의 관련 서류가 미흡 - 1점 : (실제적으로 일부검체에 대하여 외부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검체에 대한 외부 의뢰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p>○ 의뢰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목록과 수탁 기관, 의뢰하기 전까지 준비 과정(보관, 운반), 의뢰서류 양식(치료 채취일, 검체명, 검사명, 수검자 정보, 수탁기관 정보), 검체 인수·인계방법, 결과의 보관·처리 과정, 담당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B.2.4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여 여부	취득 점수	
B.2.4.1	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결과 평가	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가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0	
	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가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2	
	정도관리 선택항목 참가 성과가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지정항목이외에도 선택항목에 대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유도</p> <p>○ 최근 2회분 정기정도관리 실시 결과(공단 연구원 자료) 활용 - 단, 정기정도관리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방법으로 평가</p> <p>○ 평가기준 - 20점 : 최근 2회 종합 선택항목 적합 4개 이상 - 12점 : 최근 2회 종합 선택항목 적합 3개 - 4점 : 최근 2회 종합 선택항목 적합 2개</p>			

B.3 신규발굴률

B.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발굴률	취득 점수	
B.3.1.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발굴률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제도권 유입을 위한 신규발굴률 평가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40% 이상	□ 50 □ 40 □ 30 □ 20 □ 10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30% 이상 ~ 40% 미만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20% 이상 ~ 30% 미만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20% 미만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0%		
<p>○ 평가목적 : 기초 산업보건제도인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이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권 유입이 취약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발굴률을 평가</p> <p>○ 평가기준</p> <p>신규발굴률 = (17년도 신규사업장 비율 + 18년도 신규사업장 비율) / 2</p> <p>- 해당 사업장(20인 미만 사업장 신규)이 전혀 없는 경우, 득점그룹별 평균점수반영</p> <p>※ 신규사업장 : 특검 실시 연도 기준 3년 이내 특검 미실시 사업장</p> <p>○ 평가방법</p> <p>- 평가대상기관이 평가기간('17.5.1~'18.12.31) 동안 공단에 전송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중 20인 미만 사업장 통계 활용</p>			

B.4 고객 만족도

B.4.1	고객만족(수검자, 사업장) 및 서비스 향상활동		취득점수
B.4.1.1	특수건강진단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수준향상을 위한 내부 위원회 설치 등 개선활동	개선활동 노력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개선활동 노력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2	
	개선활동 노력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수준향상을 위한 내부 위원회 설치 등 개선활동정도를 평가</p> <p>○ 특검기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개선활동에 따른 기록이 있음 - 12점 :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고, 개선활동이 없는 경우 - 4점 :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개선활동이 없는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향상을 위한 위원회는 특검기관 내·외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구성 사실이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외부 직원이란 특수건강진단 해당 분야 이외의 인력이 참여한 경우 포함 - 특수건강진단부서 또는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시한 개선노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위원회 개최 실적(외부위원 참석)이 연 1회인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B.4.1.2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기관 이용자의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구축 여부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구축이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구축이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구축이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수검자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p> <p>※ '체계 구축'이라 함은 기관내부에 불만 접수,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명시(문서, 공지 또는 전산 등)되어 있는 것을 말함</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접수, 처리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 6점 :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접수, 처리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 2점 :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가 없는 경우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 및 고충 처리결과 안내 시스템이 없는 경우 '미흡'로 평가 - 시스템은 있으나 처리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로 평가 			

B.4.1.3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국어 서비스제공 여부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20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12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4
<p>○ 평가목적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국어 서비스제공 여부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외국어 문진표 및 개인표 5종이상 비치 및 특수건강진단 임상 절차에 대한 모국어 서비스를 전달체계 구축되어 있음 - 12점 : 외국어 문진표 및 개인표 5종이상 미만 비치 - 4점 : 외국어 문진표 및 개인표 미비치 <p>※ 모국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공공기관, NGO단체 등과 모국어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업무협약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p>		

B.4.1.4	직원 신분공개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시 직원 신분 공개(신분증 패용)	신분공개 상태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신분공개 상태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
	신분공개 상태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특검기관 종사자들이 수검자가 쉽게 확인 가능한 형태의 신분증(명찰)을 착용하도록 하여 수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전 직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고 신분증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 3점 : 직원의 일부만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고 신분증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 1점 : 전 직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신분증 상태가 알아보기 힘든 경우 		

B.4.1.5	수검자 사생활 보호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수검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 여부	수검자 사생활 보호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
	수검자 사생활 보호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
	수검자 사생활 보호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
<p>○ 평가목적 : 검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진 내용, 신체 노출 뿐 아니라, 특히 집단 검진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행여부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점 : 검진 각 단계별 공간분리가 80%이상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 3점 : 검진 각 단계별 공간분리가 60%이상~80%미만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행 - 1점 : 검진 각 단계별 공간분리가 60%미만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시행 <p>○ 평가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 검진시 각 단계별로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있는지, 출장 검진시 각 단계별로 독립적인 공간 또는 적절한 차폐막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검진실시 여부판단 - 건강진단 결과서는 본인외 타인이 개봉해서는 안되며(경고문구의 삽입 등), 수검자의 개별 정보는 본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없이 사업주에 제공되어서는 안됨. 		

B.4.2	사후관리 대상 지도	취득 점수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명의 적절성 여부 확인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경우	□ 20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보통인 경우	□ 12	
	유소견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 4	
<p>○ 평가목적 : 특수검진에서 전체 유소견자들(D1, D2, DN)을 대상으로 기관으로 내원케 하거나 의사나 간호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하는 것은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바, 유소견자들에게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80% 이상 - 12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50%이상~80% 미만 - 4점 :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50% 미만 <p>※ 화학적 인자에 대한 직업병 요관찰자(C1)의 사후관리 지도가 해당자의 50%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한단계 상향 평가</p> <p>○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소견자(D1, D2, DN) 10명 이상 선정(5개 사업장 이상) - 사업장에 소속된 특검기관인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내 유소견자 10명을 선정하여 확인 - 업무 담당자라 함은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평가에서는 간호사도 인정함 - 평가대상이 전혀 없는 기관의 경우 총 득점 그룹별 평균점수 적용 			

B.5 그 밖의 제 반사항

B.5.1	문진결과 결과표 관리 및 결과표 송부	취득 점수	
B.5.1.1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의 적정성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개인표 송부일의 적정성	건강진단 개인표 송부가 적정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50	
	건강진단 개인표 송부가 보통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건강진단 개인표 송부가 미흡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p>○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결과 개인표 송부일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건강진단일 기준으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점 :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90% 이상인 경우 - 30점 :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10점 :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70% 미만인 경우 			
가 점 항 목	대상 : 평가기간 동안 비용지원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10점)		
	- 평가기준 : 결과표 제출 또는 전송일 기준으로 평가		
	- 반송·삭감비율(%) = [(17년 비율) + (18년 비율)] / 2		
	반송비율20%미만 및 삭감비율 0.5%미만	10점	
반송비율20%미만 또는 삭감비율 0.5%미만	5점		
※ 반송비율(%):[(반송 처리된 파일 건수)/(정상 및 반송파일 전체건)]×100			
※ 삭감비율(%):[(삭감 처리된 파일 건수)/(정상 및 삭감파일 전체건)]×100			
B.5.1.2	문진결과 기록보관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결과의 전산화 등 기록보관 확인	문진결과의 전산자료 보관이 적절함	<input type="checkbox"/> 10	
	문진결과의 전산자료 보관이 보통임	<input type="checkbox"/> 6	
	문진결과의 전산자료 보관이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2	
<p>○ 평가목적 : 문진결과의 전산화 등 기록보관 정도를 평가</p>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점 : 문진결과의 80% 이상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음 - 6점 : 문진결과의 30% 이상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음 - 2점 : 문진결과의 30% 미만만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거나,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B.6 직업병 감시 체계 (가점 항목)

B.6.1	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최대 +50점)	취득 점수	
<p>○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과 ② 미 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중 높은 항목을 반영</p> <p>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질환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보고한 실적을 평가 - 중독질환 발굴 건별 +30점 <p>② 특수건강진단 미 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간 동안 직업환경의학과 내원 근로자 또는 타 진료과의 의뢰 대상자에 대한 중독질환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보고한 실적을 평가 - 중독질환 발굴 실적이 있는 경우 +50점 <p>○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D1)발굴에 대한 판정 즉시(결과표송부 30일전) 고용부 또는 공단에 통보한 실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 사업장 당 10점 부여 - 고용부 또는 공단에 통보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문서 등)가 확인되어야 함 <p>※ 화학적 인자(162종) (유기화합물 108종, 금속류 19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허가대상물질 13종)</p>			